

디자인 제도 및 등록요건

김 시 호 교수

메일: jurist4024@gmail.com



Con tents

- 디자인 제도의 목적과 개념
- 기자인 등록요건
- 3 디자인 출원 및 심사
- 4 디자인의 특유제도

Chapter.

제도의 목적과 개념

디자인 제도의 목적과 개념

디자인제도전반 1회



디자인 보호법의 목적

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(제1조)

-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
- 디자인 창작 장려
- 산업발전 도모





디자인의 정의(P.171-174)

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- 디자인의 물품 독립 거래
- 디자인의 형태성 고정 형체
- 디자인의 시각성 식별
-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

물품성

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*부분디자인제도

형태성

일정한 고정의 형체 (형상,모양,색채 또는 그 결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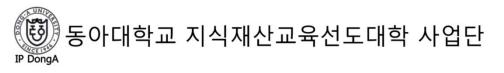
시각성

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(현미경에 의한 식별 등 제외)

심미성

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낄 수 있을 것





Chapter.

디자인 등록 요건

디자인 등록 요건(P.178-181)

공업성 :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의 양산이 가능할 것

- 자연물이나 순수 미술작품 등은 등록 불가

신규성 : 출원 전에 국내·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

- 출원 전에 공지·공용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
- * 신규성상실의 예외제도 : 창작성에도 적용

창작성 :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부터 용이한 창작이 아닐 것

- 간단한 형상이나 모양 : 단순한 육면체, 원기둥
-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(전형적인 축구공, 잠실운동장 등)



디자인 등록 요건(P.175)-소극적 요건

국내·외의 국기, 훈장,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·유사한 디자인

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

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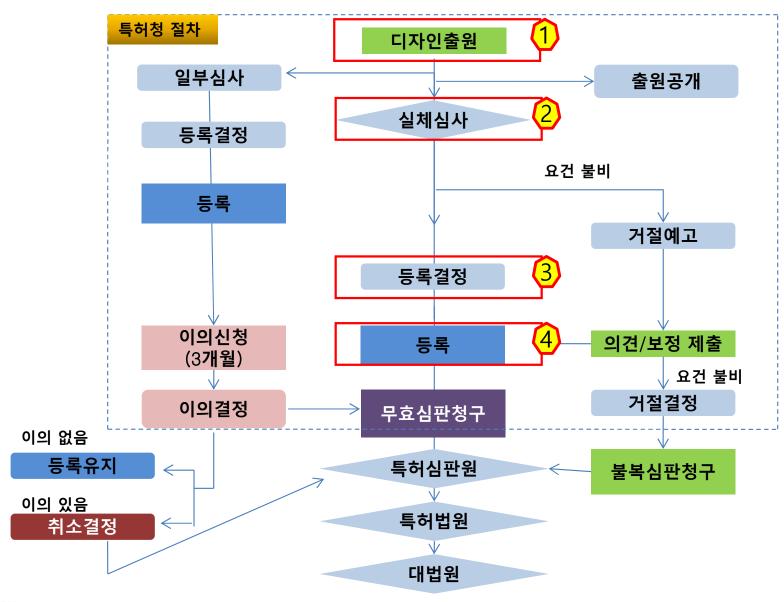
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불가피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



Chapte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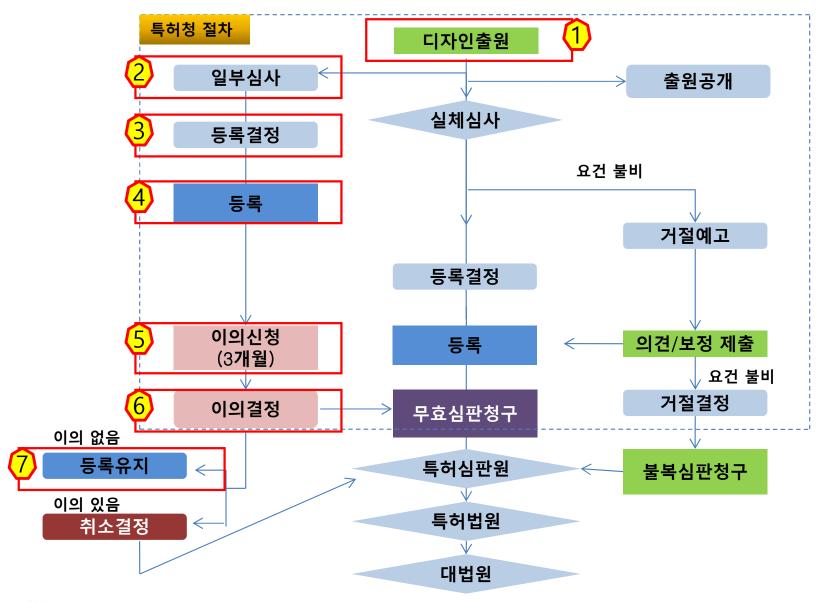
디자인 출원

디자인출원 절차





디자인출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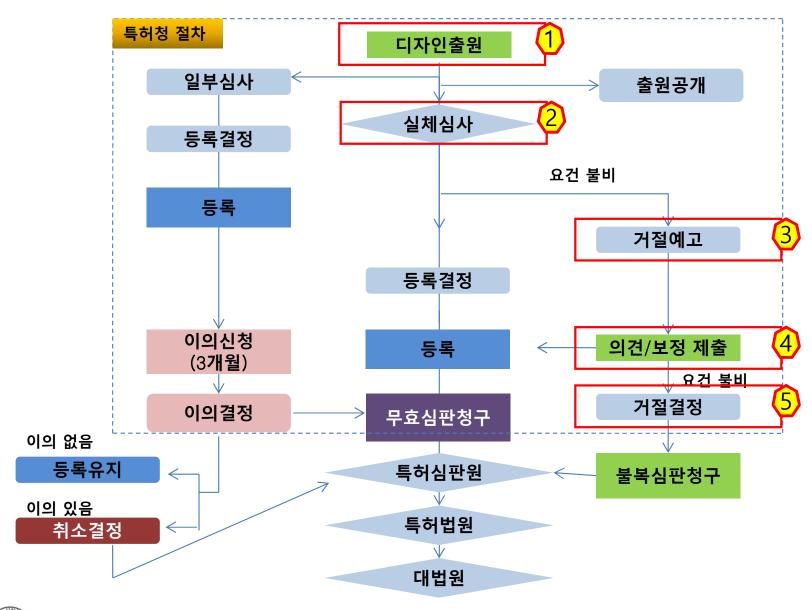




Chapte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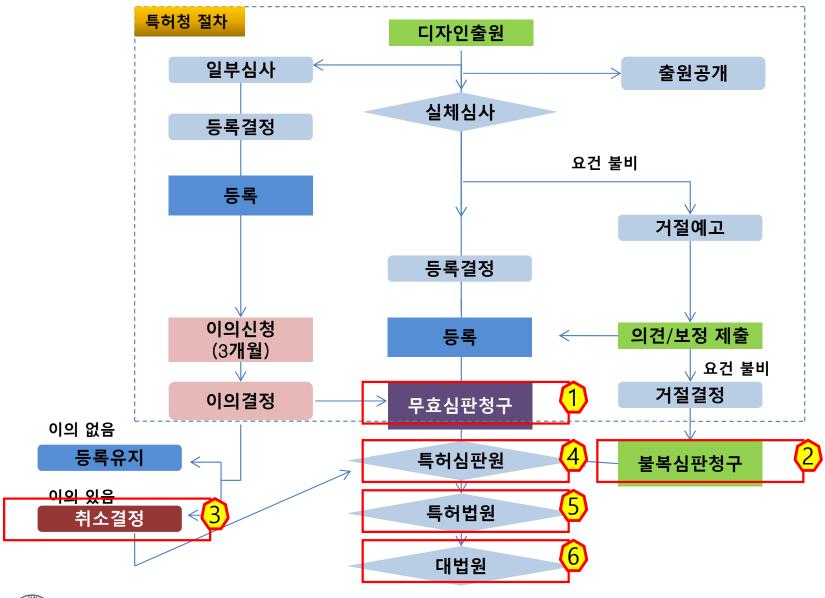
디자인 출원 심사

디자인 출원 심사





디자인 출원 및 권리 불복절차





Chapter.

디자인 특유제도

디자인 유사판단



디자인 유사 판단

1. 물품

동일:용도,기능 동일 / 유사:용도동일,기능상이 / 비유사:용도상이 (단, 용도상 혼용가능여부 고려. 수저통vs연필통, 음식찌꺼기발효통vs쓰레기통)

2. 형태

-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비유사.단,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, 배열, 무늬의 크기, 색채를 종합판단
-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로 고려안함.

3. 속성별 판단기준

참신한 디자인 vs 동종류의 것이 많이 나오는 디자인(직물,젓가락,자전거,신사복) 잘보이는 면에 비중을 둠(텔레비전,에어컨,전화기) 당연히 있어야할 부분 vs 다양한 변화가능 부분(수저의 손잡이) 대소차이, 재질, 기능/구조/정밀도/내구력/제조방법: 원칙적으로 고려안함.



디자인 유사판단

- 글자체의 물품구분 중 한글/영문/외국문자/숫자/특수기호/한자 상호간은 비유사
- 글자체의 동일, 유사판단(디자인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가능)
- 1.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



















<복사>

<기계적 복제(모양,굵기)>

<기계적 복제(장식)>

2.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













<부분적 변경>

<파생글자체용 변경>

3. 기존 글자체의 자족(字族, 패밀리 글자체)에 해당되는 경우



















<자족(굵기)>

<자족(모양)>

<자족(장식)>



디자인 특유제도



1디자인 1출원제도

- 1건의 출원에는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해야 함

11조1항: 1물품 1디자인을 출원할 것 단일물, 합성물, 부품, 부속품, 한벌물품, 다용도물품, 1물품의제 집합물 Ex) 병과 병마개(단,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), 도면에 2이상의 물품표현(단, 한벌물품) 한글 글자체와 영문 글자체, 한글과 특수기호, 영문과 숫자 등

11조2항: 산자부령이 정하는 물품구분에 따를 것.

Ex) 상표명, 건축용품, 촬영장치, 16밀리, CAMERA, 고미바꼬, 경첩, 한세트,

<u>형태에 관한 명칭, oo제, 컵의 손잡이 등.</u> <u>글자체(X), 한글 글자체(O)</u>

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거절, 정보제공이유







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

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물품인

A1(제조식품류),B1(의류), C1(침구류), F3(사무용지류), F4(포장지류),

M1(직물지류)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, 화상디자인은 대분류가

동일한 경우 100개까지 1출원 가능

대분류 상이: 삭제보정, 출원분할

100개 초과: 삭제보정, 출원분할

심사등록대상물품이 포함: 출원분할, 출원변경

Ex) F2 2종, F3 3종, F4 3종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한 경우





비밀디자인 제도

-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등록된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(등록 후 3년 이내)



조기공개 제도

- 희망하는 경우 출원사실을 등록 전에 공개할 수 있음
- 보상금청구권 발생.



일부심사등록 제도 및 복수디자인제도

-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일단 등록을 허여한 후 제3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 부여
- 일부심사대상 물품에 한하여 복수디자인 출원가능(100개 이내)





부분디자인 제도

- 2001년 개정법에서 물품의 부분도 등록가능.
- 부분디자인임을 표시
- 물품의 명칭은 'oo의 부분'이 아닌 물품구분표에서 지정
-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, 이외의 부분은 점선으로
-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1점 쇄선으로 경계도시
- 물품의 전면(全面)을 도시
- 디자인의 설명에 그 취지 기재

"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"

디자인 특유제도



동적디자인

-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기하여 변화 ex) 고무호스
- 정지상태로부터 변화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을 것 ex) 접철식 의자
- 변화는 시각으로 감지
- 변화에 일정성이 있을 것
- 정지상태, 동작중 기본자태, 동작의 내용을 나타내는 흔적 등을 변화 전, 후의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사시도와 6면도를 작성
-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
- 권리는 전체로서 1개 발생, 정적디자인과 이용관계 성립가능





한벌물품디자인 제도

2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

-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(31종으로 확대)
- 1) 각 구성물품의 형태가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
- 2)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표현 재떨이, 담배갑, 라이터 및 받침대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거북이 형상을 표현한 것
- 3) 각 구성물품의 형태에 의해 전설이나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주는 경우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물품에 관련있게 표현한 것
- 4) 별표5의 구성물품에 적합해야 한다. 단,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
- 별표5에서 정한 물품의 명칭사용한 출원서, 도면 제출



디자인 특유제도



유사디자인제도

- 자기의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으로만 출원, 등록받을 수 있음(기본디자인과 동시 소멸)

기본디자인(3003642330000호)



유사디자인(3003642330001호)







디자인권의 내용

-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
- 실시 :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, 사용, 대여,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



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

- 민사상의 구제 : 침해금지 청구, 손해배상 청구, 신용회복 청구, 부당이득반환 청구
- 형사상 제재 : 침해죄(7년 이하의 징역. 1억원 이하의 벌금, 친고죄)



디자인권 분쟁 해결 절차(2원적 구조)

- 디자인권의 존부 및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 : 특허심판원→특허법원→대법원
- 디자인권에 관한 민·형사 분쟁 : 일반소송구조



Thank You for Listening

